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026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채무면제로 발생한 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활용하도록 의무화(민병덕의원안)	3
2. 일시적·현금성 지원금 수령시 기본공제금액 감액 규정 신설 (맹성규의원안, 민병덕의원안)	6

I. 개요

1.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02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민병덕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8. 6.
- (3) 회 부 일 : 2025. 8. 7.

나. 제안이유

코로나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등 정부가 국민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자산과 관련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논란이 되어 왔음.

선별적 지급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속하고 공평한 지급이 가능함.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장기 채무를 탕감하는 경우 사업자인 수혜자는 채무탕감 받은 금액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도록 하면 과도한 세제상 이중혜택을 배제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국가가 사업자의 채무를 면제해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의 채무를 면제·소멸하여 줌으로써 발생한 부채의 감소액이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고,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과세표준 산출 과정에서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금액에서 차감함(안 제50조제1항단서 신설).

다. 비거주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함(안 제119조제12호하목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채무면제로 발생한 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활용하도록 의무화(민병덕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활용하도록 의무화(제45조의2 신설) ○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업자의 채무를 면제·소멸하여 줌으로써 발생한 부채의 감소액이 있는 경우 해당 부채의 감소액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도록 의무화</u> - <u>이월결손금의 보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u>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민병덕의원안 2025. 8. 6. 발의(의안번호 12026)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의 채무를 무상으로 면제 면제·소멸해 줌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채무를 면제할 경우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당장 과세이익으로 처리하거나 납세자가 임의로 처리하도록 두지 않고, 기존의 이월결손금을 감축하도록 의무화하는 취지로 이해됨.

□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장기 채무를 감면하는 수혜를 주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감면받은 금액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도록 의무화하면,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를 즉시 하지 않되,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이월결산금 규모는 감소시키게 되는데, 채무면제로 이미 경제적 이익을 받은 납세자가 채무감면받은 금액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차기에 다시 공제함으로써 이중적인 혜택을 얻는 것을 차단할 수 있으며, 동일 상황의 납세자 간 과세 형평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채무면제이익을 곧바로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조세 부담을 유발하기보다는 우선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택하여 당기 현금유출(세금 납부)을 억제함으로써, 사업자의 현금흐름을 보호하되 미래의 공제 혜택은 배제하여 과세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향후 높은 한계세율 구간 또는 고(高)이익 구간에서 이월결손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이월결손금을 상계시키는 것이 가치가 큰 장래의 이월결손금을 비자발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하므로, 기업 재무전략 차원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사업자는 세율이 더 높은 구간이나, 높은 이익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월결손금을 활용하면 세금 절감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데, 의무충당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에 이월결손

금이 강제로 활용될 경우, 장래에 예측되는 고세율·고이익 구간에서 이월결손금을 활용할 기회를 상실하게 됨.

둘째, 공적 채무면제의 성격 및 사업자의 이월결손금 유무에 따라 지원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목적은 재난구호, 정책적 보조, 구조조정 등 사안별로 다양한데, 상황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활용하도록 할 경우 공적 채무면제의 목적에 따라 지원의 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 또한, 기업이 보유한 이월결손금의 규모에 따라 채무면제에 따른 과세결과가 달라짐에 따라 동일한 공적 지원에 대해서도 납세자 간 체감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셋째, 개정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보전 방법 등”에 대해 법률에서 기본원칙 및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위규정에 위임할 경우, 시행령 차원에서 보전 순서, 범위 및 예외에 대한 설정 범위의 변동 폭이 커짐에 따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9

2. 일시적·현금성 지원금 수령시 기본공제금액 감액 규정 신설 (맹성규의원안, 민병덕의원안)

현 행	맹성규의원안	민병덕의원안
☐ 기본공제(제50조) ○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수 × 연 150만원 ○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 <신 설> ☐ 국내원천 기타소득(제119조제12호) <신 설>	☐ 일시적지원금 범위내에서 기본공제금액 규정 신설(제4항 신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금액 감액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 일시적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시적지원금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 현금성 지원금 상당금액을 기본공제에서 차감하는 규정 신설(제1항 단서 신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금액 감액 - 국가나 지자체가 긴급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상지급하는 지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 자산을 받은 경우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에서 제외 ☐ 비거주자가 수령한 현금성 지원금을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에 포함하는 규정 신설(타목 신설) ○ 국가나 지자체가 긴급

현 행	맹성규의원안	민병덕의원안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상지급하는 지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시행일: 공포한 날 ○ 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맹성규의원안 2025. 6. 18. 발의(의안번호 10929), 민병덕의원안 2025. 8. 6. 발의(의안번호 12026)

□ 2건의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을 수령한 범위에서 기본공제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맹성규의원안은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거주자에 해당 과세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지원금(이하 “일시적지원금”)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공제액을 감액하려는 것이고,

민병덕의원안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거주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상지급하는 지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 자산을 받은 경우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공제금액에서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수령한 현금성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려는 것임.

- 기본공제 등 인적공제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를 둠으로써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과세 실현을 취지로 하는 제도임.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포함)인 배우자·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개정안은 국가재난사태, 민생 경제위기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급 대상의 선별 없이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방식을 취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2025년도의 경우 경기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제2차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고 총 31.8조원의 규모로 예산이 확정되었음. 이 중 소비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총 12.2조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소득수준 및 지역권별로 소비쿠폰 지급

액이 상이¹⁾하여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추가로 요구되는 상황임.²⁾ 이에 개정안과 같이 지원금을 비선별적으로 지급하되 지원금의 범위에서 기본공제액을 감액하여 해당 감액분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2025년 제2차 추경 예산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행정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음. 응능부담의 원칙이란 경제적인 급부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리로서 동일한 경제적 능력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세가 부담되어야 하며(수평적 공평), 높은 담세력이 있는 자는 낮은 담세력을 갖는 자에 비하여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임(수직적 공평). 지원금 교부와 관련하여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선별 지원의 필요성³⁾이 제기된 바 있음. 또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통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⁴⁾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재정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조세 부담을 일부 가중하여 실질적 의미의 수직적 형평을

1) (1차 8.1조원) 전 국민에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인구감소지역 추가 5만원, 비수도권 추가 3만원) 지급
(2차 4.0조원) 건보료 기준으로 대상자 선별후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제2차 추경예산 집행계획. 2025.7.5

2) 정부는 민생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건보공단 보험료를 상담할 수 있는 고객센터 및 지사민원상담 지원 예산으로 19억 9,200만원을 편성했으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시스템 중앙처리장치(CPU) 증설 관련 예산은 29억 2,200만원으로 추산됨.

3) 한은 총재 “2차 추경, 보편지원보단 선별적 지원이 낫다”, 매일경제, 2025.6.19.

4)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2024.8.21. 관계부처 합동

조세·재정지출간 연계 부족으로 국가 재원배분의 통합분석, 효율배분, 성과평가에 한계가 있으므로 통합재정 관리 기반을 구축하며, 조세·재정지출간 유사·중복 관리를 강화하며, 평가 및 환류를 강화할 것

실현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인적공제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적공제제도 중 기본공제는 납세자의 소득 창출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및 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담세력에 맞게 조세를 부과하려는 것임.⁵⁾

개정안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기본공제금액에서 수령한 지원금 중 일부를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공제 제도는 납세자와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비는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상 편의를 위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기본공제를 감액하는 것은 기본공제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둘째,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준수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포괄위임금지 원칙이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상 원칙임.⁶⁾⁷⁾

5) 인적공제제도를 통해 과세단위간의 상이한 인적구성에 상응하는 공평한 소득세의 부담을 실현하며, 최저생활비에 대한 면세, 저소득층의 실효세율에 대한 완만한 누진성의 확보, 가족의 수에 따른 세부담의 차등, 업무량의 축소와 세무행정비용의 절감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인적공제는 소득세의 과세원칙인 최저생활비 면세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소득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비(Familienexistenzminimum)에 대한 과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최저생활비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

맹성규의원안은 기본공제 감액과 관련한 종합소득금액의 수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일시적지원금의 범위, 일시적지원금의 범위에 따르는 구체적인 감액 규모를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민병덕의원안은 기본공제에서 감액되거나(거주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되는(비거주자) 현금성 지원금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긴급한 현안 해결”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또한 조세의 부담을 가중하는 침익적인 성격을 지닌 공제대상의 조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의 하위 법령 규정에 의해 가능하게 되어,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음.

문 의 처

02)6788-5149

6)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7)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음.헌법재판소 2006.4.27 2004 헌가 19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